민법 · 가정법

변호사 : 신혜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문 내자식 잘못 내가 야단쳤는데 내 자식 뺐어가다니

〈문〉 저는 15세, 10세의 두 자녀를 가진 아버지입니다. 일주일전 첫째 아이가 학교도 안가고 안좋은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사실을 알고 야단을 쳤습니다. 야단을 치는 도중에 그만 언성이 높아지고 머리와 어깨부분을 몇대 때렸습니다. 다음날 어깨부분의 멍자국을 선생님이 보고 소셜워커한테 신고를 한 모양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동소셜워커가 아이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여자는 큰 아이와 1시간 가량 면담을 마친 후 둘째 아이도 또 따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후에 우리 부부가 아이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했더니 큰 아이 어깨에 멍이 심하게 들었다며 아이들의 짐을 간단히 꾸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후 그 여자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 있으며 앞으로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 귀하의 경우 복지단체법 제300조에 근거하여 귀하의 자녀들을 부모로부터 격리시켜 데려간 것으로 사려됩니다. 복지단체법 300(a) 조항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으로 해를 입혔을 경우, 해당 기관이 소년 법원에 사실 조사와 그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소년 법원은 미성년 아동들의 복지와 이익을 부모대신 보호해야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됩니다. 귀하의 자녀들은 정부 아동보호소나 혹은 정부인가를 얻은 단체나 개인의 집에 배치되었으리라 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격리된 지 3일 이내에, 소년 법원은 해당기관이 제출한 사건 보고서와 부모와 아이들의 상태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아이들을 부모에게 돌려보내도 안전한지, 부모가 아닌 제3의 친척에게 당분간 보내야 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짓는 공판을 갖게 됩니다. 신체적인 체벌이 입증됐을 경우, 부모들은 해당 소셜워커가 권유하는 자녀 양육교육이나 상담에 적극 참여하려는 의지와 실제의 참여도를 보여줌으로써 자녀와의 격리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케이스 자체도 경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 한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경우, 자녀양육비 재조정 가능한지

〈문〉 저는 지난 7년간 저의 딸과 아들을 위해 자녀 양육비로 월 900달러를 지급해 왔습니다. 금년초에 큰딸이 18세가 되었고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월 90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까.

〈답〉 귀하께서는 귀하의 이혼 판결문을 다시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녀 양육비는 자녀가 18세에 이를 때까지만 자녀 양육비 지불의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의 이혼 판결문에 한 아이 앞에 얼마씩 자녀 양육비가 할당이 되어있는지, 또 그 기간이 기본적인 법과 달리 18세 이후로 연장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검토하시고, 만약 판결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을 경우, 귀하께서는 큰따님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는 사유에 근거하여 자녀 양육비의 감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이혼 후 자녀의 성씨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문〉 저는 5년 전에 이혼을 하였고 7살 짜리 딸이 있는 엄마입니다. 이혼할 당시, 저는 제 본래 성씨를 되찾았고 아이는 아직 그대로 아빠의 성을 쓰고 있습니다. 아이 아빠는 지난 5년간 아이와 인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저도 곧 재혼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또 자녀를 두게되면 제 딸 아이 혼자만 성씨가 달라 혹이라도 새 가정에서 고립감을 느낄까봐 염려됩니다. 제 딸아이의 성씨를 저의 성씨로 바꿀 수 있는지요.

〈답〉 가능하다고 봅니다. 귀하께서는 따님의 이름변경 신청서를 해당 민사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름 변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이의 양쪽 부모가 모두 신청서에 사인하여야합니다. 어느 한쪽 부모라도 아이의 이름변경 신청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이름 변경을 신청하는 부모는 이에 참여치 않는 부모에게 이름 변경 신청서와 법원 출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전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단, 이름 신청에 참여치 않는 부모의 행방을 모를 경우, 그 부모의 행방을 알기 위해 그의 친척이나 친지에게 연락했다던 지, 마지막 주소로 해당 서류를 보냈다던 지, 선거자 명부록, DMV 기록, 우체국 주소 변경 기록, 전화 번호부 등을 통해 그의 주소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정 출두일 이전에 해당 카운티의 신문에 아이의 이름 변경에 대한 공고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상담」은 독자들이 엮는 페이지입니다. 이민 · 법률 · 부동산 · 세금 · 노동문제등에 관해 질문이 있으시면 본보 편집국 지상상담자에게 서면질의를 해주십시오. 질문서신에는 낮동안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시기 바라며, 개별적인 서신회답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편지보내실 주소 : The Korea Times 4525 Wilshire Blve. LA, CA90010

만족한 결과를 약속합니다

김 대현
회사 213-381-0810
직통 213-810-7280
비퍼 213-470-5467

• 주택구입융자-뱅크럽시 OK
• 재융자-5%, 10% Down하신분 현재 PMI내고 계신분 최고시기-현재 30년 페이먼트를 15년으로
• 2, 3차-$125,000 즉시융자

최저의 이자율과 적은 비용으로 여러분의 융자를 도와드립니다
NATIONAL BANKERS